

뉴욕시 는 임산부 및 자녀를 둔 사람들을 포함한 유능하고 활기에 찬 직장인들이 넘치는 가정 친화적인 도시입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귀하의 업무능력유지와 지속적인 고용보장을 위하여 귀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뉴욕시 인권법은 직원들이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의료 질환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고용주에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가 동 법률에 의거한 권리를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직원과 상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당한 편의에 합의해야 합니다:

- 직장에 대한 직원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합니다
- 직원이 자신의 필수적인 직무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고 원하는 한 근무를 보장해야 합니다
- 그외에, 직원에게 적합하며, 경영상의 지나친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는 다른 합당한 편의요청에 합의해야 합니다.

합당한 편의에 대한 요청을 무시하거나 요청 후에 직원을 해고하면, 손해 배상과 민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거한 귀하의 의무에 대하여 정보를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법률에 의거한 직원의 권리를 통지하는 방법을 비롯하여,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업원

지속적인 근무 또는 고용 유지에 대한 합당한 편의가 필요할 경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식 (예: 화장실 이용, 용이한 수분 섭취 또는 필요한 휴식 제공)
- 육체노동의 지원
- 근무 환경 변화
- 출산 휴직
- 모유 착유를 위한 사적인 청결한 공간과 휴식
- 격무 면제 또는 힘이 덜 들거나 위험하지 않은 보직으로 일시 이동
- 출산 후 회복을 위한 휴직

적절한 대체 조치도 없이 합당한 편의에 대한 요청을 무시 또는 거부 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에게 적절하며 합당한 편의의 유형은, 직원과 고용주의 필요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여성의 고용 유지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위원회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시
인권위원회

NYC.gov/HumanRights 또는 전화 **311**

@NYCCHR

Bill de Blasio 시장 • Carmelyn P. Malalis 위원장/의장

